|  |  |  |
| --- | --- | --- |
|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서 국가배상안건 심사 시 대질절차**  **적용에 관한 규정**  법석[2013]27호  <인민법원배상위원회에서 국가배상안건 심사 시 대질절차 적용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2월 16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60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현재 공표하는바 201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3년 12월 19일    인민법원배상위원회(이하 “배상위원회”로 약칭)의 대질절차를 적용한 국가배상안건 심사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고 국가배상 관련업무의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1. 배상위원회가 국가배상법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의 진술과 해명을 청취하고 대질심문 진행 시 본 규정을 적용받는다. 2.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고 서면심사를 통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배상위원회는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의 대질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1) 권리침해사실, 손해사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쟁의가 있는 경우  (2) 국가배상법 제19조에 규정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쟁의가 있는 경우  (3) 배상방식, 배상항목 또는 배상금액에 관한 쟁의가 있는 경우  (4) 배상위원회가 대질심문을 진행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우.   1. 국가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질심문은 응당히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배상청구인 또는 배상의무기관이 비공개 대질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경우 배상위원회는 대질심문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대질심문 활동 중 배상청구인 및 배상의무기관은 그 법률적 지위가 평등하고 대리인 위임, 기피신청 제기, 증거 제출, 해당 안건 대질자료 조회⬝복사, 진술⬝질의⬝해명의 권리를 가지며 법에 따라 대질권을 행사하고 대질심문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법률,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은 자신이 주장하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증거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한 증거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부담한다.   1. 아래에 열거된 사실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배상의무기관이 입증책임을 진다.   (1) 배상의무기관 행위의 합법성  (2) 배상의무기관의 무과실  (3) 배상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실이나 배상의무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배상청구인이 증명할 수 없게 된 사실  (4) 배상의무기관의 행위와 구금기간 피구금인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실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1. 아래의 경우 배상의무기관이 입증책임을 진다.   (1)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법에 정한 배상청구 시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3) 기타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   1. 배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의기관에 대질심문 참가를 통보하여 재심의기관이 재심의결정의 사실근거와 법률근거를 설명토록 할 수 있다. 2. 증거제출기간 중 배상청구인은 배상청구위원회에 아래 증거 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 및 그 위탁대리인이 조회⬝확보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가기관이 보관 중인 증거  (2)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  (3) 배상청구인 및 그 위탁대리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자체 수집이 불가능한 기타 증거.  배상청구인이 배상위원회에 증거수집 신청 제기 시 관련 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배상위원회는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에 증거 제공 또는 증거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관련되거나 직권에 따른 대질심문 참가자 추가, 심사 중단, 심사 종결, 기피 등 절차적인 사항과 관련된 경우 배상위원회는 관련조직과 관계자를 상대로 증거를 조사, 수집 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은 안건접수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동 기한내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배상위원회는 배상청구인 또는 배상의무기관의 신청에 근거하여 증거제출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제출기한 경과 후에 증거를 제출하였을 경우 그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증거가 비교적 많거나 어렵고 복잡한 안건의 경우, 배상위원회는 대질절차에 앞서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간의 증거교환을 실시하여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증거교환 과정은 정확히 기록하여 기타 안건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이 증거교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동 사실이 안건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증거의 경우, 대질 과정에서 판사의 설명을 거친 후 안건사실을 확정하는 의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배상위원회는 응당히 판사를 지정하여 대질심문을 실시토록 하여야 하고, 대질심문 진행 3일 전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 및 기타 대질심문 참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배상위원회는 관련 직권행위를 실시한 배상의무기관 직원과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대질심문 현장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을것을 통보할 수 있다.   배상의무기관이 대질심문을 공개 진행 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질심문 진행 3일 전에 안건개요, 배상청구인 및 배상의무기관의 명칭, 대질심문 시간과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배상안건 심사에 대질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대질을 거치지 않은 증거는 안건사실을 확정짓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법률 및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은 증거의 연관성, 진실성과 적법성을 중심으로 증거의 증명력 유뮤와 증명력 강약에 대해 대질한다. 3. 대질심문 개시 전 서기가 대질심문 참가자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대질심문과정 준수사항을 발표한다.   대질심문 시작 후 대질심문을 진행하는 판사가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을 확인하고 안건개요와 판사⬝서기 명단을 발표한 후,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에 대질의 권리⬝의무를 고지하고 기피신청 여부를 질문한다.   1. 대질의 일반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한다:   (1)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이 각각 진술하고 재심의기관이 설명  (2) 판사가 쟁점을 요약  (3)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이 각각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발표  (4) 대질심문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검증인을 심문  (5)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간에 쟁의 사항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변론  (6) 판사가 배상청구인 및 배상의무기관간이 일치하게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를 발표  (7)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이 최종의견을 진술.   1. 배상위원회가 배상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수집한 증거는 배상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로 간주하여 대질한다.   배상위원회가 직권에 의해 수집한 증거는 대질심문 시 공개하여 해당 증거 수집경과를 설명하고 배상청구인 및 배상의무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배상청구인 또는 배상의무기관이 대질심문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인정한 경우 상대방은 그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아니하여 판사가 그 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인정여부를 재확인 하여도 여전히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대리인을 위임하여 대질심문에 참석한 경우 대리권한 범위내에서의 대리인의 인정은 본인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대질심문에 참가한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대질심문 현장에서 즉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 대리범위를 벗어난 대리인의 인정에 대해 대질심문에 참가한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대질심문 현장에서 즉시 부인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본인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의 인정이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하였을 경우 자인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아래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1) 자연법칙 및 정리, 정률  (2) 주지의 사실  (3)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추정이 가능한 사실  (4) 법에 의거하여 증명된 사실  (5) 일상생활의 경험법칙에 근거하여 추정한 사실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사실에 대해 배상청구인 또는 배상의무기관이 반대의 증거가 있어 그 진실성을 부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배상의무기관이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배상위원회는 해당 사실의 판정에 있어 배상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배상위원회는 응당히 법률규정을 근거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야 하며, 논리적 추리와 일상 생활경험을 운용하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3. 서기는 대질심문의 모든 과정을 심문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대질심문기록은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 및 기타 대질심문 참가자가 대조 확인 또는 보정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동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여 판사와 서기가 서명한다.   조건을 구비한 경우 배상위원회는 대질심문의 전 과정을 동시 녹음⬝녹화 할 수 있다.   1. 대질심문 참가 통보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질심문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허가 없이 중도 퇴출한 경우 대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배상위원회는 안건 상황과 상대방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건 사실을 확정한다. 2. 아래 열거한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질심문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질심문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임시로 기피신청을 제기하였고 단기간내에 기피여부결정이 어려운 경우;  (3) 신규 증인 소환, 신규 증거 수집, 재감정, 재검정 또는 보충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연기하여야 하는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1.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규정 시행 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과 본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에 따른다. |  | **关于人民法院赔偿委员会**  **适用质证程序**  **审理国家赔偿案件的规定**  法释〔2013〕27号  《关于人民法院赔偿委员会适用质证程序审理国家赔偿案件的规定》已于2013年12月16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0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3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3年12月19日    　　为规范人民法院赔偿委员会（以下简称赔偿委员会）适用质证程序审理国家赔偿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等有关法律规定，结合国家赔偿工作实际，制定本规定。  **第一条** 赔偿委员会根据国家赔偿法第二十七条的规定，听取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的陈述和申辩，进行质证的，适用本规定。  **第二条** 有下列情形之一，经书面审理不能解决的，赔偿委员会可以组织赔偿请求人和赔偿义务机关进行质证：  　　（一）对侵权事实、损害后果及因果关系有争议的；  　　（二）对是否属于国家赔偿法第十九条规定的国家不承担赔偿责任的情形有争议的；  　　（三）对赔偿方式、赔偿项目或者赔偿数额有争议的；  　　（四）赔偿委员会认为应当质证的其他情形。  **第三条** 除涉及国家秘密、个人隐私或者法律另有规定的以外，质证应当公开进行。  　　赔偿请求人或者赔偿义务机关申请不公开质证，对方同意的，赔偿委员会可以不公开质证。  **第四条** 赔偿请求人和赔偿义务机关在质证活动中的法律地位平等，有权委托代理人，提出回避申请，提供证据，申请查阅、复制本案质证材料，进行陈述、质询、申辩，并应当依法行使质证权利，遵守质证秩序。  **第五条** 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对其主张的有利于自己的事实负举证责任，但法律、司法解释另有规定的除外。  　　没有证据或者证据不足以证明其事实主张的，由负有举证责任的一方承担不利后果。  **第六条** 下列事实需要证明的，由赔偿义务机关负举证责任：  　　（一）赔偿义务机关行为的合法性；  　　（二）赔偿义务机关无过错；  　　（三）因赔偿义务机关过错致使赔偿请求人不能证明的待证事实；  　　（四）赔偿义务机关行为与被羁押人在羁押期间死亡或者丧失行为能力不存在因果关系。  **第七条** 下列情形，由赔偿义务机关负举证责任：  　　（一）属于法定免责情形；  　　（二）赔偿请求超过法定时效；  　　（三）具有其他抗辩事由。  **第八条** 赔偿委员会认为必要时，可以通知复议机关参加质证，由复议机关对其作出复议决定的事实和法律依据进行说明。  **第九条** 赔偿请求人可以在举证期限内申请赔偿委员会调取下列证据：  　　（一）由国家有关部门保存，赔偿请求人及其委托代理人无权查阅调取的证据；  　　（二）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的证据；  　　（三）赔偿请求人及其委托代理人因客观原因不能自行收集的其他证据。  　　赔偿请求人申请赔偿委员会调取证据，应当提供具体线索。  **第十条** 赔偿委员会有权要求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提供或者补充证据。  　　涉及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或者他人合法权益的事实，或者涉及依职权追加质证参加人、中止审理、终结审理、回避等程序性事项的，赔偿委员会可以向有关单位和人员调查情况、收集证据。  **第十一条** 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应当在收到受理案件通知书之日起十日内提供证据。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确因客观事由不能在该期限内提供证据的，赔偿委员会可以根据其申请适当延长举证期限。  　　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无正当理由逾期提供证据的，应当承担相应的不利后果。  **第十二条** 对于证据较多或者疑难复杂的案件，赔偿委员会可以组织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在质证前交换证据，明确争议焦点，并将交换证据的情况记录在卷。  　　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在证据交换过程中没有争议并记录在卷的证据，经审判员在质证中说明后，可以作为认定案件事实的依据。  **第十三条** 赔偿委员会应当指定审判员组织质证，并在质证三日前通知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和其他质证参与人。必要时，赔偿委员会可以通知赔偿义务机关实施原职权行为的工作人员或者其他利害关系人到场接受询问。  　　赔偿委员会决定公开质证的，应当在质证三日前公告案由，赔偿请求人和赔偿义务机关的名称，以及质证的时间、地点。  **第十四条** 适用质证程序审理国家赔偿案件，未经质证的证据不得作为认定案件事实的依据，但法律、司法解释另有规定的除外。  **第十五条** 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应围绕证据的关联性、真实性、合法性，针对证据有无证明力以及证明力大小，进行质证。  **第十六条** 质证开始前，由书记员查明质证参与人是否到场，宣布质证纪律。  　　质证开始时，由主持质证的审判员核对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宣布案由，宣布审判员、书记员名单，向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告知质证权利义务以及询问是否申请回避。  **第十七条** 质证一般按照下列顺序进行：  　　（一）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分别陈述，复议机关进行说明；  　　（二）审判员归纳争议焦点；  　　（三）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分别出示证据，发表意见；  　　（四）询问参加质证的证人、鉴定人、勘验人；  　　（五）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就争议的事项进行质询和辩论；  　　（六）审判员宣布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认识一致的事实和证据；  　　（七）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最后陈述意见。  **第十八条** 赔偿委员会根据赔偿请求人申请调取的证据，作为赔偿请求人提供的证据进行质证。  　　赔偿委员会依照职权调取的证据应当在质证时出示，并就调取该证据的情况予以说明，听取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的意见。  **第十九条** 赔偿请求人或者赔偿义务机关对对方主张的不利于自己的事实，在质证中明确表示承认的，对方无需举证；既未表示承认也未否认，经审判员询问并释明法律后果后，其仍不作明确表示的，视为对该项事实的承认。  　　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委托代理人参加质证的，代理人在代理权限范围内的承认视为被代理人的承认，但参加质证的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当场明确表示反对的除外；代理人超出代理权限范围的承认，参加质证的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当场不作否认表示的，视为被代理人的承认。  　　上述承认违反法律禁止性规定，或者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他人合法权益的，不发生自认的效力。  **第二十条** 下列事实无需举证证明：  　　（一）自然规律以及定理、定律；  　　（二）众所周知的事实；  　　（三）根据法律规定推定的事实；  　　（四）已经依法证明的事实；  　　（五）根据日常生活经验法则推定的事实。  　　前款（二）、（三）、（四）、（五）项，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有相反证据否定其真实性的除外。  **第二十一条** 有证据证明赔偿义务机关持有证据无正当理由拒不提供的，赔偿委员会可以就待证事实作出有利于赔偿请求人的推定。  **第二十二条** 赔偿委员会应当依据法律规定，遵照法定程序，全面客观地审核证据，运用逻辑推理和日常生活经验，对证据的证明力进行独立、综合的审查判断。  **第二十三条** 书记员应当将质证的全部活动记入笔录。质证笔录由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和其他质证参与人核对无误或者补正后签名或者盖章。拒绝签名或者盖章的，应当记明情况附卷，由审判员和书记员签名。  　　具备条件的，赔偿委员会可以对质证活动进行全程同步录音录像。  **第二十四条** 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经通知无正当理由拒不参加质证或者未经许可中途退出质证的，视为放弃质证，赔偿委员会可以综合全案情况和对方意见认定案件事实。  **第二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延期质证：  　　（一）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因不可抗拒的事由不能参加质证的；  　　（二）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临时提出回避申请，是否回避的决定不能在短时间内作出的；  　　（三）需要通知新的证人到场，调取新的证据，重新鉴定、勘验，或者补充调查的；  　　（四）其他应当延期的情形。  **第二十六条** 本规定自2014年3月1日起施行。  　　本规定施行前本院发布的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